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0. 5. 22.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2020.6.1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징수과장 박재숙】

가. 제안이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개정사항 반영 및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수수료 감면 대상자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6조)
 - 감면 대상자 각 개별 법령의 『등록 및 결정』 조항 인용
-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개정내용 반영(안 제6조, 별표 1)
 - 감면 대상자 규정(안 제6조제4항 신설)
 -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정비(안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 ※ 주민등록표의 열람,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등 항목 신설
- 3) 관계법령 사항 반영(안 제1조, 별표 1)
 - 목적(안 제1조, 수수료 징수 관련 조례 근거 법령 정비)
 -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항목 삭제(「사도법 시행규칙」 반영)

3. 검토보고(전문위원 최국모)

- 본 안건은 2020년 5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의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감면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근거가 되는 각 개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제1조를 살펴보면 동 조례의 목적이 정의되어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조항을 기존 ‘제136조, 제137조 및 제139조’에서 ‘제137조, 제139조 및 개별 법령’으로 개정하고, 제6조(수수료의 감면 규정) 제1항제2호에 근거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하였고, 제3호, 제4호, 제6호, 제7호에서는 기존 근거법령 인용문을 ‘따른’에서 ‘따라 등록 및 결정된’으로 개정하고, 제9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제7조’로 개정하는 등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그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제6조에 제4항을 신설하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는 제1항제5호의 규정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에 한정한다고 개정함.
- 이는 2019년 11월 19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42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음. 즉, 기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등록 장애인의 수수료 면제 규정이 없었으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대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따라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그 밖에,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에 위 개정 조항에 상응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항목을 각각 신설하

고자 하는 것이며, 제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신청’ 조항은 「사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수료 없음’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관계법령과 맞지 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